

캄보디아의 혼인에 관한 법제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새로운 국제결혼법
- III. 가족법상의 내용
 - 1. 총 칙
 - 2. 결혼조건
 - 3. 결혼에 대한 이의제기
 - 4. 결혼의 무효
 - 5.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 6. 이 혼
- IV. 맺음말

I.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중 캄보디아인과의 결혼 비중은 매우 높다. 즉,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결혼비자 발급 건수는 2004년 72건에 그쳤으나, 2007년에는 1759건으로 폭증했다. IOM(국제이주기구)보고서는 최근 4년 동안 모두 2,500여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추산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중개업자들을 통한 한국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의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제 문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여성들의 국

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은 중개업자에게 최고 2만달러(약 1,948만원)를 지불하지만 캄보디아 신부 가족에게 돌아가는 돈은 5%인 1,000달러(약 97만원)에 불과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062312265&code=970207].

제결혼을 당분간 금지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²⁾ 2008년 3월에는 IOM이 보고서를 통해 ‘불법 국제결혼 알선조직이 캄보디아 여성들을 한국으로 송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경향신문 3월27일자 16면 보도)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이 같은 결정은 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 조치는 정부가 국제결혼에 적용할 법률적 틀을 마련한 후 해제될 것”이라고 한다.³⁾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국제결혼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캄보디아의 혼인법제에 관해 많은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에 본 보고에서는 캄보디아의 새로운 국제결혼법에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괄적인 규정에 대해서 보고, 캄보디아의 가족법상의 혼인법제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⁴⁾

II. 새로운 국제결혼법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은 앞으로 자신의 재정상황, 전과기록, 건강진단 결과 등의

공증서류를 캄보디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나이도 55세 이하로 제한되며,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소양 심사’도 직접 받아야 한다. 즉, 캄보디아가 조만간 발표할 국제결혼 규정은 55세 이하 예비 신랑이 신용불량 여부·재산 규모가 담긴 재정상황 서류, 질병·장애 여부를 담은 건강진단서, 학력 기록부 등을 자국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이러한 새 규정의 내용은 그동안 한국 남성들이 부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호적등본 등 가장 기본적인 서류만 필요한 것에 반해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다. 특히 상세한 설명없이 ‘소양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 관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뇌물 등 음성적 거래를 더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III. 가족법상의 내용

1. 총 칙

헌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혼인과 가족의 목적은, 결혼과 가족을 규정해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의 부부의 동등을 보

2) 캄보디아정부는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관하여 캄보디아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국제결혼 허가 등 모든 국제관련 업무를 잠정적으로 멈추어 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왔다.

3)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중단 조치는 사실상 한국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아시아의 빈국들에게 한국은 ‘돈으로 신부감을 끌라 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4)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70818171111112\(2008.9.8\)](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70818171111112(2008.9.8)).

증하고, 부모의 아이를 양육할 책임과 양육에 대한 애정을 고양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덕과 교육 개발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혼인 및 가족법 제1조).

미성년자 간의 결혼이나 자유의사에 반한 강압적인 결혼은 금한다(제2조).

2. 결혼조건

결혼이라 함은 법률에 따라 임의로 해소할 수 없는 남녀간에 있어서 애정이 엄숙한 계약이다. 결혼은 혼인 및 가족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제3조).

법률적 연령에 이른 남녀는 결혼을 스스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누구라도 결혼이 본 법률에 정해진 기준을 만족시키는 한 결혼을 강요하거나 또는 거부되어 지지 않는다(제4조).

이때의 법률적 연령에 이른 남녀란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허가된다. 20세에 달하지 않은 남자 또는 18세에 달하지 않은 여자여도 여자가 임신했을 경우, 양친 또는 보호자(복수)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혼은 합법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조).

결혼에 있어서 ① 쌍방이 동성인 경우, ② 남자가 성적 불능인 경우, ③ 나병, 결핵, 암, 또는 성병의 경우 완치 되지 않은 사람, ④ 정신이상자 또는 지능장애자, ⑤ 이전의 결혼이 해소되어 있지 않은 자의 경우 그 결혼은 금지된다(제6조).

그리고 혈통 또는 결혼에 의한 친척 사이의 결혼은 적출자 또는 양자를 불문하고, 모든 단계에서의 직계의 결혼은 금지된다(제7조). 또한, 방계 사이에 있어서의 결혼은, 적출자, 사생아, 양자를 불문하며, 또한 같은 아버지, 어머니, 양친 인가는 관계없이, 또는 혈통이 결혼에 의한 친척 인가를 막론하고 3촌까지 금지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한사람은 제6촌수 또는 제3촌수 단계의 방계결혼을 할 수 있다(제8조).

그리고, 부의 사망, 결혼의 무효선고 또는 이혼에 의한 결혼의 해소의 후에,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있다. 단, 부의 사망 후 300일, 결혼 무효선고 후 300일, 이혼승인판결 후 300일의 법정임신 기간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민사법원이 별거를 재정(裁定)해서 결정했을 경우에는 법정임신 기간은 그 별거재정의 결정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단, 여자가 300일을 지나지 않고 재혼했을 경우에는, 전남편이 충분한 증거에 의한 반대가 없는 한, 새로운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생부로 간주된다(제9조).

배우자의 한사람이 상대 또는 다른 제3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1년 이상에 걸쳐 실종상태에 있을 경우, 그로부터 15일을 경과해서 그 또는 그녀가 생사 또는 재혼하고 있는지 불명을 이유로서 그 또는 그녀의 실종의 판결을 내리는 재판의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누구라도, 실종자가 다시 나타나도, 새로운 결혼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10조).

새로운 결혼식이 행하여지기 전에, 양친 또는 보호자와 동반해서 새로운 부부는 신부가 살고 있는 관할구역의 인민자치단체위원회(People's Committee of Commune or Section)에 재혼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11조).

인민자치단체위원등기소의 책임자는 신부의 집과 자치단체의 사무소에 결혼식의 공식발표를 해야 한다⁵⁾. 공표의 내용에는 ① 장래의 부부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② 장래의 부부의 양친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의 경우는 「사망」이라고 기재한다), ③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명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2조).

결혼은 신부가 사는 사법등기관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자발적으로 서로의 상대를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약속을 하는 것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제14조).

3. 결혼에 대한 이의제기

남녀 배우자의 친척이나 그 외 이해당사자는 결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혼 공고가 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제15조). 이때, 이의제기를 하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이의제기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의제기 시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16조).

결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 또는 남녀 배우자의 대표에 의해 장래의 아내가 사는 관할구역의 자치단체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수리한 3일이내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자 또는 장래의 부부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위원회는 부동의를 받은 5일이내에 사건서류를 인민재판소(People's Court)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제17조).

그리고 인민재판소는 사건수리 후 7일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때의 인민법원의 결정은 결석재판이여도 변경은 할 수 없다(제18조).

인민법원이 결혼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부했을 때에는 장래의 부부는 결혼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했을 때에는 등기관은 결혼식에 반대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제19조).

결혼 대상 남자 또는 여자가 결혼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본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록관은,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어도 2일 이내에 그 결혼을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이 때에는 법원은 본법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라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제20조).

5) 전조의 공표는 반대자가 불평을 제소할 수가 있도록 10일간에 걸쳐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지는 것 같은 방법으로 게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가 없었던 때에는 10일간이 경과한 후에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다(제13조).

4. 결혼의 무효

결혼상대방이 정신 이상 또는 정신병을 가지는 경우의 결혼은 무효이다. 다만, 병이 치유되면 결혼은 유효로 한다(제21조). 그리고 20세 미만의 남자와 18세 미만의 여자와의 사이의 결혼은 무효로 한다. 무효인 결혼이어도 남자 및 여자가 법에 따르는 연령에 이르면 유효가 된다(제22조).

배우자의 어느 쪽이든 한편이 그 또는 그녀가 결혼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그 결혼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결혼 무효의 이의제기 기간은 그 또는 그녀가 강요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한다(제23조).

결혼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전에 결혼을 한 일이 있고 그것이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결혼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이 신고 된 후에 첫 결혼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제24조).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친족간 혼인이나 사돈쪽 인척간 혼인은 무효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무효의 이의제기에 대한 출소기한은 없다(제25조).

배우자, 검찰관 및 법률적 이해관계자만이 결혼 무효의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의제기의 제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률상의 대리자가 그 또는 그녀를 위해서 이의제기의 제출을 계속할 수가 있다(제26조).

법관이 무효를 선언한 결혼의 기간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 결혼의 무효에 관계없이 적출자로

한다. 아이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리와 의무는 이혼의 경우에도 동등하다. 결혼이 무효라고 선고된 남편과 아내의 재산의 분할은 이혼의 경우와 같은 방법에 의해 분할한다(제27조).

무효로 판결이 난 판결문은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하며, 법원은 혼인증명서의 여백에 무효가 되었다는 수기를 기록하여야 한다(제28조).

5.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가족 중에서 남편과 아내는 모든 면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다(제29조). 남편과 아내는 번영의 촉진과 행복하고 서로 돕는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살피며,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30조).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제31조).

남편과 아내는 공동의 재산을 사용해, 이익을 얻고, 관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그 또는 그녀의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이익을 얻고, 관리하는 자격이 주어진다(제32조).

공동의 재산이라 함은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으로 또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구입했거나 취득한 모든 것을 말한다(제33조). 다만, ① 한편의 배우자가 결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② 한편의 배우자가 결혼 중에 선물, 상속, 유산으로 해서 받은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재산으로 간주한다(제34조).

① 가족을 위한 지출 비용과 아이의 교육 및 지식의 개발비용, ② 배우자가 결혼 중에 동의 한

채무 및 의무 또는 배우자의 한편이 다른 배우자의 승낙을 얻은 결혼 중의 부채 및 의무, ③ 공동 재산의 유지 및 관리는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각 배우자는 공동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는 공동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동재산을 관리하거나 안전하게 두는 것에 대해 상호간에 동의를 구한다(제36조). 공동재산의 매매나 처분은 상호합의 하에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제37조).

6. 이혼

(1) 이혼의 근거

이혼이라 함은 법적으로 결혼을 했던 남편과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으로 결혼 사실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제38조). 남편 또는 아내는 부부 사이의 동거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① 합당한 이유가 없이 또는 조치가 없이 가족을 유기하거나 자식을 돌보지 않을 경우, ②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잔인하고 심하게 구타하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상대 배우자 및 그 조상을 멸시하는 경우, ③ 부도덕한 행위, ④ 성적 발기 불능, ⑤ 부부가 1년 이상 별거를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제39조).

또한 남편과 아내간에 이혼을 합의할 수 있다(제40조).

(2) 이혼절차

이혼의 판결을 하는 관할 법정은 피고측이 거주하고 있는 인민 지방 또는 시법원(People's Provincial or Municipal Court)이 가진다(제41조). 이혼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혼신청서는 원고가 직접 피고측이 거주하는 인민 지방 또는 시법원 또는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인민위원회는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 불능인 때에는 즉시 인민 지방 또는 시법원에 송부한다(제42조).

인민 지방 또는 시법원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을 법정에서 출석시키어 만약 소송의 이유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원고에게 소송을 취하할 수 있게 적절한 노력을 해 보아야 한다(제43조). 이혼 소송을 접수한 후에 인민 지방이나 시법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부부의 별거명령을 내리거나, 자식을 잘 돌보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재산을 잘 관리하라거나, 양육을 잘 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변호사도 입회할 수 있다(제44조).

만약 소송 당사자가 강하게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민 지방 또는 시법원은 아내와 남편 모두 법정에서 출두시키어 재화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때에는 당사자들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나와서는 안 된다(제45조). 그리고 인민 지방 또는 시법원은 최초의 조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화해에 이르지 않았던 때는, 제2회재의 조정을 실시한다(제46조).

원고와 피고가 제1회의 조정에 출두하지 않았던 때에는, 인민 지방 또는 시법원은 조정이기 때문에 제2회째의 출두명령을 쌍방으로 요구할 수 있다(제47조).

만약 원고가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 지방 또는 시법원은 이 사건 자체를 이유없다고 기각시킬 수 있다(제48조).

그리고, 만약 피고 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 및 시법원은 피고가 법정 대항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제49조). 또한,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위하여 인민 지방 또는 시법원은 소환장을 발부하여 남편과 아내를 소환하여야 한다(제53조).

만약 쌍방이 모두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그 협의이혼 소송이 자발적인 것이며, 강압적인 사실이 없는지를 수사한 뒤에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제58조).

어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부부가 더 이상 같이 살수가 없다는 것을 조사한 후에 그 사실이 심각하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제59조).

아내가 임신 중이면, 아내가 출산 후 1년이 될 때까지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아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자의 경우에는 비록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3) 이혼의 효과

이혼은 그 판결을 받은 날부터 결혼을 무효로

한다(제69조).

이혼을 하는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만약 재산분배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각자는 결혼 전에 가지고 왔던 개인 재산과 선물, 상속 및 유산 받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추가로 각 배우자는 공동재산의 반씩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법원 공동재산을 다른 비율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자녀들의 이익과 근로 상황을 고려한다.

가정에서의 가사는 외부 직장의 근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제70조).

만약 어느 일방의 배우자의 개인 재산을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훼손하였을 경우, 훼손한 배우자는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제71조).

이혼의 판결은 부모의 입장에서 행하여지며 자녀의 보호권 수임과 아버지, 어머니 및 자녀간의 관계 등을 결정한다(제72조).

자녀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려하여 누가 양육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혼하는 부부간에 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관례로서, 아직 수유중인 자녀는 당연히 어머니가 양육을 맡아야 한다. 만약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제73조).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자식의 보호, 교육비와 학비 등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금액은 이혼 당사자간에 합의로서 정할 수 있다. 만약 이혼 당사자간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 당사자들의 소득 상황을 파

악하여 그 금액을 명령할 수 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한다(제74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 중 한편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양육권을 가진 측은 다른 측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 만약 자녀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측은 언제라도 법원에 양육권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제75조).

만약 잘못이 없이 이혼을 한 측은 다른 측에게 생계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쪽은 형편에 따라 생계비를 요구하는 쪽을 지원하여야 한다. 생계비 지원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을 한다. 만약 생계비 지원을 받는 쪽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제76조).

(4) 외국에서의 결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

외국에 사는 캄보디아 시민의 사이 또는 캄보디아 시민과 외국인의 결혼은 양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캄보디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등기(기록) 담당자에게 출석하여야 한다.

캄보디아인 간 또는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간에 결혼 법에 정한대로 정식 결혼을 하고 또 캄보디아(State of Cambodia)의 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법으로 유효한 결혼이 된다.

결혼증명서 또는 그 사본은 당해 캄보디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 등기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배우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의 자치체(Commune or Section)의 등기소에 결혼증명서 또는 사본을 송달하고 재록(載錄)하여야 한다(제79조).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사이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의 법에 따른다(제80조).

외국인과 캄보디아인간에 또는 외국인들 간에 캄보디아 국내에서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캄보디아 국내에 거주하는 어느 한 배우자가 결혼의 무효를 제기할 때 캄보디아인민법원은 그 결정을 할 자격이 있다(제81조).

IV. 맺음말

향후 우리나라 사람과 캄보디아 사람의 국제결혼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번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중단조치 및 이에 대한 법률에 대한 개정분위기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사람과 캄보디아 사람간의 국제결혼에 좀 더 엄격한 요건이나 절차가 더해질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캄보디아의 대처에 대한 반성을 하고 좀더 명백하고 분명한 국제결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도 법률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결혼에 있어서 캄보디아의 결혼법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국제결혼은 당사자간의 이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부분에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법률제도의 이해도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사람으

로서 캄보디아 사람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캄보디아 결혼법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